



제 429회 국회 (정기회)
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 근거 명확화〉
■ 이정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0260호)

2025. 9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전문위원 성소미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 근거 명확화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이정문의원 등 10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4. 30.
3. 회부연월일 : 2025. 5. 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을 규정하되, 예외적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및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가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. 이에 대해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 가입,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·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, 법률에 조합원 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3조 제2항 단서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1.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 근거 명확화

개정안은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협동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의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13조(조합원의 자격) ① (생략)	제13조(조합원의 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법 제13조제1항1)2)3)은 “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

1)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

제13조(조합원의 자격)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.

2)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소기업자”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
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.”라고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예외로 “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

이처럼 현행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」 제4조에서는 “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”라는 조항을 두고 있음⁴⁾.

이에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, 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의 경우 조합 가입,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·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, 법률에 조합원 수 제한에

가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(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)을 영위하는 자

나. 중소기업협동조합

3)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

제3조(종류 등)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협동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
2. 사업협동조합(이하 “사업조합”이라 한다)
3. 협동조합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
4. 중소기업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

4)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」

제4조(조합원 자격의 예외)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“중소기업자 외의 자”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.

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대한 근거를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02) 6788-5463